

일 자리 안정자금





발표순서

- I 사업 개요
- II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요건
- III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 IV 신청절차 및 방법
- V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등
- VI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인정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

’18년
최저임금
7,530원

’17년 대비
1,060원 인상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 ①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3조원 내외,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 감안 대상선정
- ② 제반 비용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 ③ 공정거래질서 확립: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등

8.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안)」 의결 (국무회의)

* 기재부·고용부(공동주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부처 TF 운영

11.9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사업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사업 기간 → 2018.1.1~12.31

사업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조건)

사업신청 →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EDI, 4대 보험 연계센터
오프라인: 복지·건보·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지원 방식 및 지원 금액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시 소급 지급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3~12만원
일 용 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 10~13만원

(근로자 1인당)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체계 및 절차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 총괄
- 예산편성 및 배정(보조금 교부)
-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부정수급액 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근로복지공단

- 사업 주체 (보조금 집행)
- 관리 및 홍보
-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부정수급 적발, 환수명령)



보조금 신청

사업주



접수

온라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3공단 EDI 등

오프라인

복지·건보·연금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심사

근로복지공단
(e-나라도움)



지급

근로복지공단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e-나라도움)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요건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요건 심사

사업주 지원 요건



- 「30인 미만」 여부
- 「고소득 사업주」 여부
-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
- 「국가 및 공공기관」 여부
- 「인건비 지원 사업주」 여부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여부

근로자 지원 요건



- 「보수 190만 원 미만」 여부
- 「1월 이상 고용 유지」 여부
- 「사업주 특수관계자」 여부
-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여부

지원 요건 1차 심사



「일자리안정지원시스템」
을 통한 1차 심사(공단)

일자리안정지원시스템

지원 요건 2차 심사



「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 활용
2차 심사

e나라도움 ※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보조금 통합 관리 전산시스템

기업

business

- ☑️ **요건 1** 30인 미만 사업(주)일 것
- ☑️ **요건 2**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 ☑️ **요건 3**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 ☑️ **요건 4**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 **요건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 **요건 6**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 ☑️ **요건 7** 고용을 유지할 것





[지원대상 기업] 30인 미만 사업(주)



☑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

* 동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하여, 사업주가 신청 시 지급시작을 희망하는 달을 선택할 수 있음

-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희망월 전월까지 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외국인 등)자를 포함하여 산정
- 단,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
초단시간 근로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0.5명으로 산정

☑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산정

☑ 지급 도중 근로자수 변동(인원 증가)이 발생한 경우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
- 지원중단 이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재신청 가능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제외 1] 고소득 사업(주)



☑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 최초 지원신청일 기준 2016년 이후 가장 최근 연도 과세소득

개인사업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연도 '사업소득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소득금액: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

☞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공동대표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 금액

법인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 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 당기순이익: 일정 기간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개념



[지원제외 2]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고용부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제도 개요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 43조의2)
 - 공개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성명·상호·나이·주소(법인은 대표자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3년간 체불총액
 -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 공공장소
 - 공개기간: 3년
- ☑ 법인은 해당 법인, 개인사업주는 대표사업주 및 공동대표도 포함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 아니어야 함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 근로자에 임금체불 발생 시, 해당월부터 지급 중단



[지원제외 3] 국가 등 공공기관



☑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아래 기관 (총 1,106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소, 기초 228개	245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36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398개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초·중·고등학교	76개



[지원제외 4] 인건비 재정지원사업 대상



- ☑ **원칙**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금을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는 지원 배제

- ☑ **예외**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금 상향조정 하거나, 임금의 전부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근로자수만큼 차감 후 지급
(지원근로자수 × 13만원)



요건 1

요건 2

요건 3

☑ 요건 4

요건 5

요건 6

요건 7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지원제한 유형1

재정보조받는 사업체 자체를 지원배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

- 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정 다음달 부터 일자리 지원 제외)
⇒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원. 단, 지자체로부터 '확인서' 제출
- ②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
ex)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③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 ④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⑤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 통해 운영되는 기관**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요건 6

요건 7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지원제한 유형2

재정보조를 받는 근로자가 특정 ⇒ 재정보조를 받는 해당 근로자만 지원제외 (나머지는 지원)

재정보조를 받는 근로자만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지정)된 **사회적기업** (* 사회보험료만 지원받는 경우는 일자리 지원 가능)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④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업의 주 수입원이 재정지원 바우처 수입, 이하 동일)
- 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 ⑥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를 첨부하여 제출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요건 6

요건 7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지원제한 유형3

재정보조를 받는 근로자가 불특정 \Rightarrow (재정지원근로자수 \times 13만원) 차감하여 지원

재정보조 받는 근로자수만큼 지원금 차감하는 사업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3명 고용시 1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최대 2천만원)을 3년간 지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24만원 지급



고용보험 시스템 연계 **해당 재정지원 받는 사업장 및 지원받는 근로자수 확인**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요건 6

요건 7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확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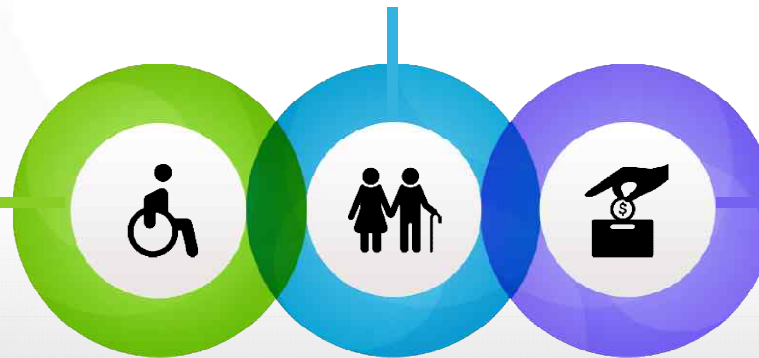
- ①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명단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스템에 탑재
- ② 고용보험시스템 통한 재정지원 사업명 확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급 여부 확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

: (재정지원인원수*13만원) 만큼 일자리 지원금 차감 후 지급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 사업주는 지자체 '확인서' 발급후 제출 ⇒ 재정지원 근로자 지원배제



지원기간 도중 국가 등 재정 지원을 새로이 받게 되는 경우

: 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 지원 제외 또는 차감 (매월 지급전 사전 모니터링 실시)



[지원대상 기업] “최저임금 준수”



☑ 신청서 제출 당시 근로자에 지급되는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이상

*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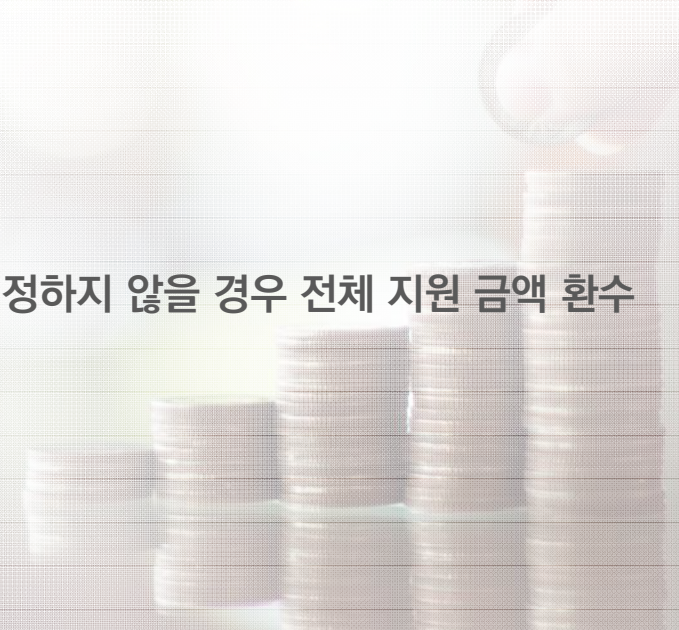
☑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

☑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에 대한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 기재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서 입력 불가

☑ 지원도중 최저임금 미준수가 확인되면

⇒ 해당월부터 사업장 전체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원 금액 환수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요건 6

요건 7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상용근로자

시간급 정액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고 있을 것

● 확인: 신청서 기재 정액급여/소정근로시간 >= 7,530원

* 월급근로자=월정액급여/월소정근로시간, 주급근로자=주정액급여/주소정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시간급 임금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 MM, DD)	수습/감사· 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 (원)	
			3월만수습 <input type="checkbox"/> 감시단속 <input type="checkbox"/>			월급 <input type="checkbox"/>	시간급 <input type="checkbox"/>
			3월만수습 <input type="checkbox"/> 감시단속 <input type="checkbox"/>			월급 <input type="checkbox"/>	시간급 <input type="checkbox"/>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일당이

- (일평균근로시간 8시간 이상) 60,240원 이상
- (8시간 미만) [일평균근로시간 × 7,530원] 이상일 것

* 일당 = 월 보수 / 월 근로일수 (매월 1일 ~ 말일 단위로 산정)

● 확인: (적용) 근로내용확인신고 (적용제외)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일용근로자 확인신고서

	26	27	28	29	30
	↓	↓	↓	↓	↓
	31	↓	↓	↓	↓
	↓	↓	↓	↓	↓
근로 일수	↓	↓	↓	↓	↓
일평균 근로시간	↓	↓	↓	↓	↓
보수지급기초일수	↓	↓	↓	↓	↓
보수총액(과세소득)	↓	↓	↓	↓	↓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요건 6

요건 7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최저임금 준수 확인 : 정액급여/소정근로시간>=7,530원

정액급여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 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진 **임금**일 것
 - ‘임금’ :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한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 * 보수 :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
 - ②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할 것
 - 소정근로: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사전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
 - 연장, 휴일, 야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가산수당은 미포함
 - ③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할 것
 - 임금이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액급여 미포함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p>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능력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p>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p>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요건 6

요건 7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최저임금 준수 확인 : $\text{정액급여} / \text{소정근로시간} = 7,530\text{원}$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월·주·시간으로 표시
- 월급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 확인: $(\text{월정액급여} / \text{월소정근로시간}) \geq 7,530\text{원}$

〈환산 식 : 주소정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① 계산식 :

$$[\text{주소정 근로시간}(A) + \text{주휴시간}(8 \times (\text{주소정 근로시간}(A') / 40))] \times (365/7) \times (1/12)$$

② 주소정 근로시간(A)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40시간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감시단속근로자 : 40시간 이상 인정
(* 상시근로자수: 사업규모 판단기간 평균근로자수 기준)

③ 주휴시간 : $8 \times (\text{주소정 근로시간}(A') / 40)$

- 주소정근로시간(A')의 최대값은 40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음)
(* 주15시간 미만, 감시단속근로자(경비원)은 주휴시간 없음)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요건 6

요건 7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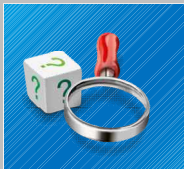
최저임금 위반 처리원칙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주 요건: 위반 시 전체 근로자 지원제한

최저임금 위반 처리방법

- (온라인 신청 차단) 시간급 환산임금 7,530원 미만 → 입력 진행 불가
- (지원요건 심사 시 확인)
 - ① 사업장 전체 근로자 지급보류
 - ② 최저임금 위반 시정요구
 - (시정) 지원
 - (미 시정) 지원제외(기 지급금 환수)





[지원대상 기업]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



☑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 사업규모 판단기간중 상실코드 23번 퇴사자는 해당 근로자 포함하여 30인 이상 여부 확인

☑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 발생시, 해당 월 지원금부터 지원 중단

☑ 불가피한 고용조정시, 이를 소명해야 계속 지원 가능

⇒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

- 고용조정 이전 달 기준 직전 3개월간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30% 이상 감소,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 축소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 기타 업종·지역경제 상황을 고려,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요건 6

☑ 요건 7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고용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 소명)”

고용미조정 사업주에 대한 예외기준 적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6. ‘기존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항목의 예외 인정**

*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 대상 근로자별로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함



근로자

worker

☑️ **요건 1**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 **요건 2** 1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 **요건 3** 특수 관계자 제외

☑️ **요건 4** 고용보험 가입

☑️ **요건 5** 기존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



[지원요건]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요건1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요건2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5일 이상 실근로

요건3

고용보험 가입
* 적용제외자(외국인, 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임업)은 가입없이 지원

요건4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고용조정 대신 임금조정한 경우 인정

지원
제외

-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조건 1

조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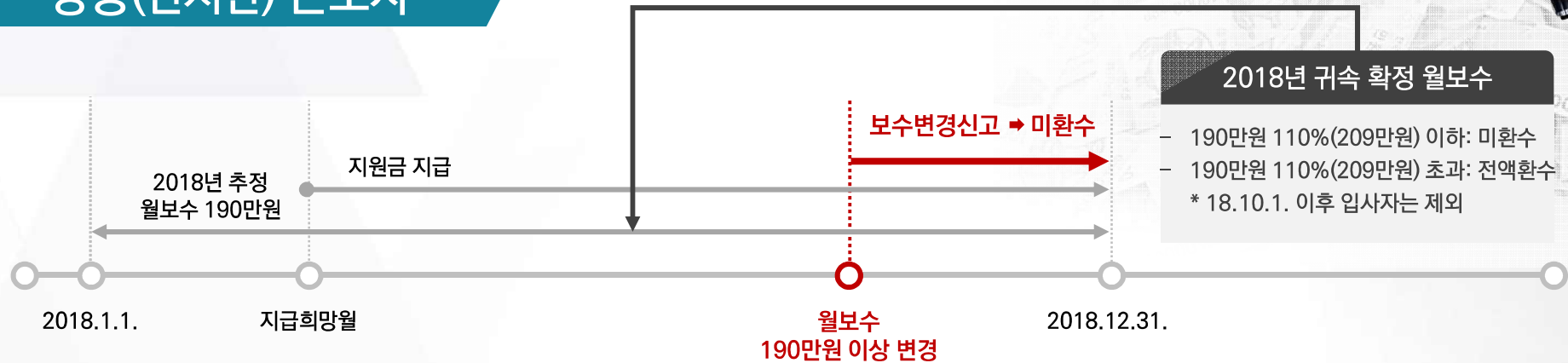
조건 3

조건 4

조건 5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단시간) 근로자



월평균보수

2018년도 추정 보수총액/해당 근무개월수

- 상용근로자: 190만원 미만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비례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

확인방법

- ① 신청서 기재 월평균보수
- ② 전년도(전전년도) 월평균보수: 190만원 이상 지원제외
- ③ 지급희망월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지급내역 (* 임금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임에 유의)
- ④ 적용제외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 보수내역 확인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조건 5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일당 87,000원 미만

- 일당: 월보수/월 근로일수
- 산정 월: 매월 1일~말일 단위로 산정

확인방법

- 적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일자리안정지원 일용근로자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지원제외(2017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106,846원)

단시간근로자

최저임금 100%~120%범위내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100% ~ 120% 구간(예시)〉

주소정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환산	최저임금 100%	최저임금 120%
10시간	44시간	331,320원	397,580원
20시간	104시간	783,120원	939,740원
30시간	156시간	1,174,680원	1,409,610원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15시간 미만은 주휴 미적용
- 월소정근로시간 환산식 예시:
[(주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8 × 주소정근로시간 ÷ 40)) ÷ 7 × 365] ÷ 12
- 예시) 주30시간 = [(30 + 8 × (30/40)) ÷ 7 × 365] ÷ 12 = 156시간(월소정근로시간)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조건 5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보수란?

보수

=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

-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1. 월 10만원 이하 식대, 보육수당
2. 월 20만원 이하 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활동비, (선원) 승선수당
3. 연간 70만원 이하 단체순수(환급부) 보장성 보험
4. 국외근로 급여(국외-월100만원, 원양어업/국외항해선박, 국외 건설현장-월300만원)
5.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가산급여(연간 240만원 이하)
6.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7. 실비변상적 금품(일·숙직료, 여비, 제복·제모·제화, 작업복·피복)



보수총액

일정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의 총액

월평균보수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1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상용(단시간 근로자)

-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1개월 미만 고용 유지자는 지원 제외

확인방법

- 고용보험DB연계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 고용보험 적용제외(5인 미만 농림어업·외국인·초단시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말일) 동안 15일 이상 근로한 경우
 - 근로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확인방법

- 근로내용 확인신고 내역 연계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 고용보험 적용제외: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일용근로자 확인신고서를 통해 확인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특수 관계자 제외”

정의

- 사업주 배우자 및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특수관계자 기준

- 개인: 대표자인 사업주(공동사업자 포함)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확인방법

- 1 e-나라도움 시스템(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을 통해 지급전 사전 확인
- 2 지급 후 e-나라도움 시스템(대법원 가족관계 증명원)을 통해 사후 재확인

위반 시 처리방법

- 특수 관계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 지원제외 (동 근로자에 대해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 다만, 근무사실이 없거나, 임금지급내역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급여대장 등을 허위 조작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가입 원칙

정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원칙

처리방법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통해 지원금 신청
- 고용보험 미취득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통해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및 적용제외 근로자도 지원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개인운영 5인 미만 농림어업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합법외국인·초단시간 근로자

처리방법

- 일자리서식으로 지원 신청

확인방법

- 적용제외 대상 확인

- 업종: 농림어업 여부, 개인 운영 여부, 상시 5인 미만 여부
 -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 외국인: 합법여부, 임의가입 체류자격 여부, 계속 근무 여부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출입국정보 등
- 초단시간: 월60시간 미만 여부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고용보험 가입”

신규가입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신고 시 보험료 지원제도
 - (두리누리 사업지원) 지원대상 보수기준 상향: 140만원 → 190만원
지원확대: (5인 미만) 보험료 90%, (10인 미만) 보험료 80%
 - (건강보험료 지원) 일자리 지원대상 + 건강보험 신규가입 시 건강보험료 50% 감면
 -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최저임금 100~120% 신규가입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실부담액 50% 2년간 세액공제

● 예시 : 5인 미만 사업체, 월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산재보험 제외, 단위 : 원

	합계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보험료율(%)	8.75	0.9	4.5	3.35
경감전 월 보험료	137,700	14,160	70,820	52,720
경감후 월 보험료	17,420	700	3,540	13,180
두리누리 지원강화	76,480	12,470	63,740	-
건보료감면	26,360	-	-	26,36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420	700	3,540	13,180
⇒ 경감방안 합계	120,280	13,460	67,280	39,540

2018년 기준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
경감 전 월 보험료 13만8천원 ⇒ 경감 후 1만7천원으로 감소

지원 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금
-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	
초과분 9%P, 12만원 +	1만원

● 근로일수 비례 지원:
월중 입·퇴사자 및 일용노동자

● 근로시간 비례 지원: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 자료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요건 1

요건 2

요건 3

요건 4



요건 5

“기존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

정의

- ’17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 전년도의 근로조건과 보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확인방법

- 고용보험 DB에 신고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월평균보수로 확인 → 보수가 전전년도 및 전년도 보수보다 낮은 경우 지원배제
 - ’18.1월~3월: 전전년도 월평균보수로 확인, ’18.4월~: 전년도 월평균보수로 확인
 - ’18.3월까지의 보수총액신고 안내, 4월 이후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 우선 지급보류 후 신고 시 지급
- * 단, ’17.10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보수 확인하지 않고 지원

☞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장은 **다음년도 3.15.까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예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함)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1 보수수준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text{지원액} = 13\text{만원} \times \frac{\text{근로일수}}{\text{해당 월 일수}}$$

*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
(퇴사·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



2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변경신고 등 사업주의 신청편의, 업무담당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적정 구간 설정)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 단시간 근로자 또한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 지급 가능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지급기준 시간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35시간	12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5시간	9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5시간	60,000원
10시간 미만	5시간	30,000원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text{지원액} = \text{구간별 지원액} \times \frac{\text{근무일수}}{\text{해당 월 일수}}$$

* 상용·단시간 근로자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해당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짐)

근로일수 별 지급 기준

월 근로일수	월 평균 근로일수	지급액
22일 이상	22일	1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0일	12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16.5일	100,000원

※ 단,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지급액을 산정
[예] 22일 이상인 경우 (130,000원×평균 근로시간)÷8시간

지급방식



지급 시기

-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지급
 - *'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지급 방법

-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최초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급방식 변경 불가

직접 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소급신청 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불가)



IV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자 및 신청시기



신청자

- ☑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보험사무대행 기관 활용 가능 (무료 대행)
 - 신청당시 해당 사업(주)이 1개월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18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18.11.30.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

신청시기

- ☑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 신청 ('18.1.1~12.31)

지급기간

- ☑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18년말 임금지급월까지 (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월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신청내용

- ☑ '18년 지급 임금
 -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급여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연중 어느때나 신청 가능 (휴·폐업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신청방식



온라인

-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5인 이상 사업장은 ON-LINE(EDI) 신청이 원칙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 기존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가능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오프라인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
- ☑ 사업장 관할 건보·연금·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주민센터 (팩스, 우편, 방문)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기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부속서류(공통)
⇒ 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

신청
서식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일반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일용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서
- 부속서류(공통)
⇒ 체크리스트

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 임금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ex) '18. 5월에 근로자 2인 지원신청시
근로자 A(1월 입사), 근로자 B(3월 입사)
→ 근로자A: 1월 임금대장,
근로자B: 3월 임금대장

첨부
서류

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신청 시 유의사항



- ✓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기가입자가 혼재 되어 있을 경우
⇒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 제출

-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의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만 가능

- ✓ 신청서와 더불어 체크리스트와 부속서류를 추가 입력(또는 제출)

- ✓ 방문 접수 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 다운

- ✓ 3공단 공동접수 등을 위해 '고용보험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
 - 개인 사업(주) 중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대표사업(주) 명의로 신청, 공동대표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신청서식에 추가 기재
 - 단, 사업규모 및 지원요건 판단은 사업(주) 단위(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로 산정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 적극 활용

추가 및 변경 신고



추가신고

- ☑ 신규 입사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추가되는 경우
⇒ '고용보험 신고서'로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

변경신고

- ☑ 사업장 및 지원 근로자 변경 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 고용보험 관련 신고 병행
- ☑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시
⇒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일자리 지원 사무대행 업무프로세스

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위 수탁계약 체결

보험사무 수입 승인
(공단)

-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간 보험사무 수입계약 승인
(공단 관할 지사)

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의뢰

일자리 자금 지원신청 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신청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월평균보수변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지원신청

지원요건 심사 및 지급
(공단)

- 사업장 및 근로자별 지원요건 심사 후 지급결정 및 지급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부정수급 정의 및 유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 ☑ 거짓 신고,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등
- 근로자의 입·퇴사일,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등록(위장 취업), 임금지급내역 서류의 위변조 등
- ☑ 노·사가 담합하여 인위적 지원요건 충족
- 사업장 분할 설립, 급여내역 및 실 근로일수 등을 조작 등
-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부정수급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적발시 조치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원금액의 5배)

형사고발 조치

- 부정수급 1천만원 이상
-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의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착오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보조금법 제33조제1항 3호)

유형

- 입·퇴사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으로 퇴사 기간 중 지원금 지급
- 월평균보수변경신고 지연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 기타, 신청인의 착오, 지연신고,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 담당자의 지원금 지급계산 착오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2

부당이득금 환수

X. 사후관리 및 부정수금액 환수

착오 지급된 지원금 환수결정

- 환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 지원금부터 환수
- 환수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별 착오 지급된 금액만 환수

처리방식

- 이후 지원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후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 지급 금액이 없는 경우 : 부정수급 환수 및 처리절차와 동일 처리

소액 환수금 환수제외

- 사업주별 월 단위 환수 대상금액이 1만원 미만(부당이득금에 한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인정 기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지원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관리하는 공동주택 각 사업장별로, 그 외의 사업은 해당 사업별로 전체 근로자수가
 - 30인 미만 ⇒ 소속 근로자 전부 지원
 - 30인 이상 ⇒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금 수령

- 최저임금 인상분의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시설주) 등에 지원금 지급
 - ⇒ 용역업체가 “지원금 + 최저임금 인상분 시설주에 재청구”하는 부정수급 방지
 - ⇒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 지원금 직접 지급하여 경비·청소원 등의 고용불안 해소
 - * 공동주택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유무, 관리비 관리 주체 등이 상이하여 유형별로 구분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1

지원기준

원칙

- 공동주택 사업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 직종에 상관없이 지원대상 근로자 전부 지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이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제곱 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 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예외

- 공동주택 사업 규모가 30인 이상인 경우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규모 판단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 : 사업장 단위
- 그 외(전문용역서비스업체) : 사업단위



2 지원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XI. 『공동주택』경비·청소원 예외 지원 기준

적용방법 규모판단

- 공동주택 관리사업: 각 사업장 별로 사업규모 판단
- 그 외의 사업: 사업별로 전체 근로자수가
 - 30인 미만인 경우 소속 근로자 전부 지원
 - 30인 이상인 경우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



사례별 지원대상 판단 예

사업주	전체 사업장수	총 상시근로자	지원신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지원대상 판단
			소계	사무	시설관리	경비청소	
A(자치기구)	1	25	25	5	10	10	전체 근로자 지원가능
B(자치기구)	1	35	35	10	10	15	경비청소원만 지원가능
C(주택관리업자)	1	30	30	10	10	10	경비청소원만 지원가능
D(주택관리업자)	2	45	20	5	5	10	전체 근로자 지원가능
E(전문용역업체)	2	25	15		5	10	전체 근로자 지원가능
F(전문용역업체)	10	100	30			30	경비청소원만 지원가능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공동주택)별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와 위탁업체간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표준협약서”
 - 표준협약서에 지원금 신청내역 기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한 경우는 협약서 불필요

신청방법

- ☑ [온라인] 4대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으로만 접수 (국민연금, 건보, 고용센터, 주민센터 접수시 해당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첩)
 - ①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② 체크리스트 작성
 - ③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공동주택용) 서식 작성·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내역’에 공동주택별로 구분 기재
 - * 용역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별로 지원대상 근로자 및 지급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구분 기재
- ☑ ‘경비·청소원’ 여부를 신청서식에 체크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시스템) 필수등록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등록
 - * 미등록 확인 시 해당 월부터 지급보류 → 등록 이후 소급 지급) ⇒ 모니터링 실시
 - * 필수등록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원금 차감 내역 등 확인



감사합니다